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0
----------	-----

제출년월일 : 2025.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 추진 필요와 2024. 7. 1.일자 조직 개편으로 행정담당관 기능 독립 및 기획예산과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담당 직위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 신설(안 제6조)
나.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당연직위원 담당직위 변경(안 제9조)
- 위원장: 담당국장 → 부군수
- 당연직위원: 예산 담당실장 → 예산 담당 부서장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240백만원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4. 10. 25. ~ 24. 1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486호, 행정담당관-9001(2024. 10. 24.)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5901(2024. 10. 16)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5901(2024. 10. 16)호]
4) 성별영향평가 : 없음 [가족복지과-14093(2024. 10. 24.)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8194(2024. 11. 18.)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8534(2024. 11. 22.)호]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

제9조제2항 중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를 “부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실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p> <p>1. ~ 11. (생 략)</p> <p><u><신 설></u></p> <p>12. (생 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u>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u>담당실장</u>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2. (생 략)</p> <p>④ (생 략)</p>	<p>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u></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부군수</u>----- ----- ----- -----.</p> <p>③ ----- <u>담당 부서장</u>----- ----- -----.</p> <p>1.·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실 근무기간 5년 이내의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전·월세 임대차 계약자)
- 100명(전·월세 임대차 계약자) × 월 200,000원 × 12개월

나. 추계 결과 : 240,000,000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권혁수
연락처	(033) 330 - 2210

